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제 1219 호 2020. 2. 20.(목)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31호[하천 점용 허가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32호[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34호[도로명주소 부여 고시]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35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36호[도로구간 변경 고시]..... 7

#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213호[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].....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237호[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] 10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 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 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31호

# 하천 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 1. 하천의 명칭

명 촌 천

### 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명촌 23길 8

### 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설치(전주)

### 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화봉동 1003-3번지, 1001번지

나. 면적 : 일시 6㎡, 영구 0.393㎡

### 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일시 : 2020. 2. 18. ~ 2020. 2. 18.

영구 : 2020. 2. 19. ~ 2024. 12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32호

#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산림보호법 제7조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,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02월 2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1. 관계도면 : 붙임
- 2.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

소재지				지적(㎡)	산림보호구역 현황		토지소유자		비고
구·군	동	리	지번		지정면적(㎡)	구분	주소	성명	
울산북구	대안		산202	11,901	11,901	경관보호구역		박대*	
울산북구	대안		산203	3,570	3,570	경관보호구역		허*	
울산북구	대안		산204	793,785	793,785	경관보호구역		대한불교조계종신*사	
울산북구	대안		741	552	552	경관보호구역		대한불교조계종신*사	
울산북구	대안		740	258	258	경관보호구역		대한불교조계종신*사	
울산북구	대안		778	198	198	경관보호구역		유동*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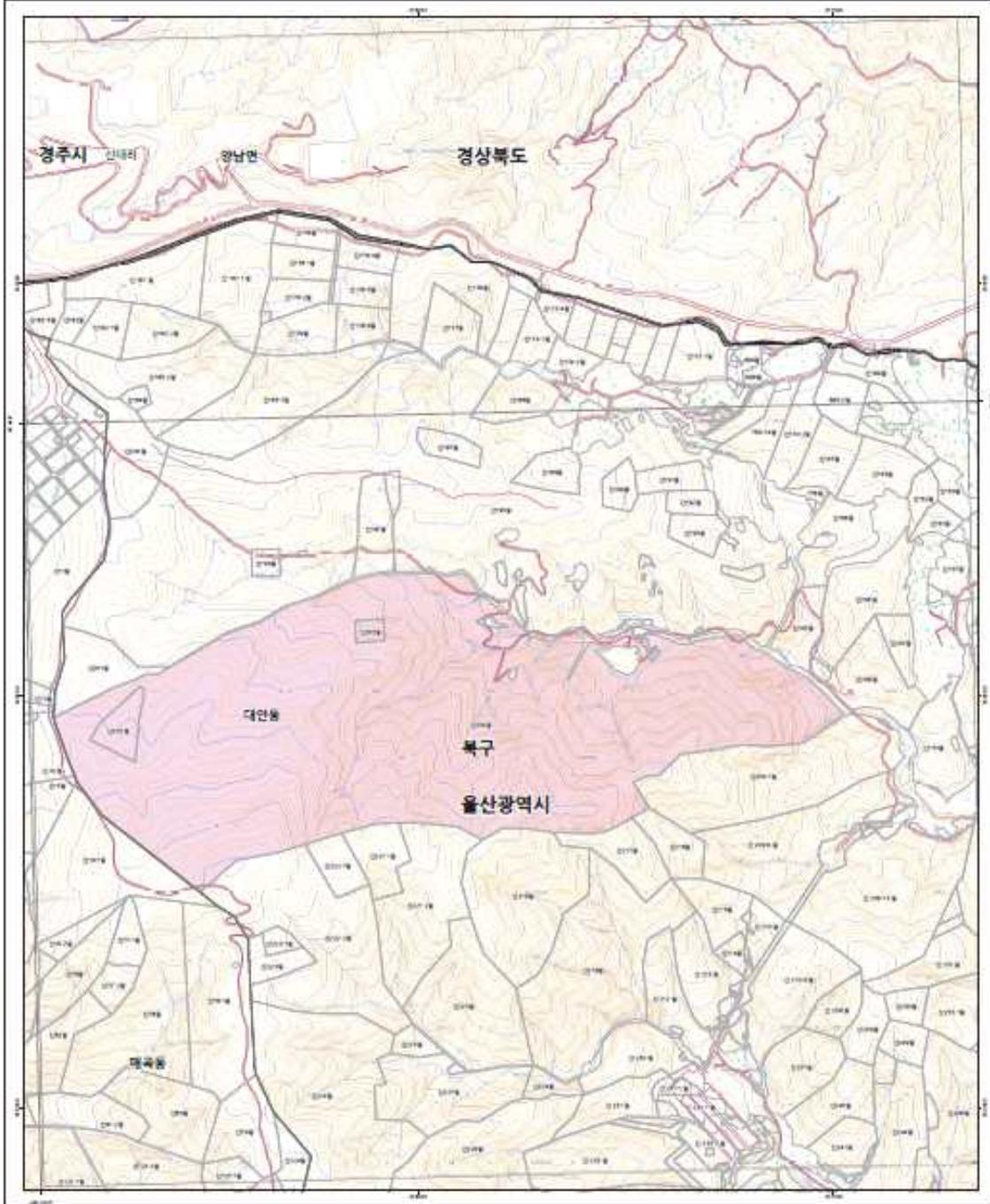
- 3. 지정 연월일 :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
- 4. 지정 사유 :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(경관보호구역)
- 5. 이의신청 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- 6.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산림담당(052-241-793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1부.

# 울산036

산림보호구역 경비도면

도면번호 : 35906036



2018년 제작

법령	
수치지도	산림보호구역
도로	생물환경보호구역
주곡선	경관보호구역
계곡선	수목형상보호구역의 제1종
하천	수목형상보호구역의 제2종
건물	재해방지보호구역
반류	산림환경자원보호구역
명승고개	행정구역
모래	시도
논	시군구
밭	동면명
과수원	리
	지적 및 참조자료
	지경
	국유지
	국유림



안 내 문

1. 축 치 경 : 축척까지 2443-10  
 2. 축 치 경 : 2443-10-10  
 3. 축 치 경 : 축척까지 2443-10-10 (축척 : 1:5,000)  
 4. 축 치 경 : 축척까지 2443-10-10 (축척 : 1:5,000)  
 5. 축 치 경 : 축척까지 2443-10-10 (축척 : 1:5,000)  
 6. 축 치 경 : 축척까지 2443-10-10 (축척 : 1:5,000)

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34호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1길 91 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 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2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
1	울산광역시 북구	신현동 917	울산광역시 북구	장등1길 91	2020-02-20	기존자연마을인장등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을 부여	2004-08-09
2	울산광역시 북구	상안동 1107-2	울산광역시 북구	더덕골길 160	2020-02-20	예전지명인상안더덕골 명칭을사용해서도로명 을부여	2004-08-09
3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동 214-2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본길 85	2020-02-20	기존자연마을인매곡본 동에위치하여도로명을 부여	2004-08-09
4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동 1166-3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12길 3	2020-02-20	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	2018-05-10
5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명촌 지구 8B 2-3L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1길 15	2020-02-20	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친숙한이름이므로 도로명을부여	2004-12-27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35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 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제내6길 31-14	매곡동 766-2	2020. 2. 20.	건축물멸실
제내6길 31-16	매곡동 766-5	2020. 2. 20.	건축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2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36호

### 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2. 20.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- 1. 고 시 일 : 2020. 2. 20.
- 2. 고시방법 : 공보,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3. 고시내용

도로구간 변경 : 장등1길(1개 구간)

※ 세부사항은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

#### 4.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

<b>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</b>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<b>주민 의견 수렴 공고</b>	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<b>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</b>	심의 마친날부터 ⇒ 10일 이내
주소사용자의 5분의1신청		14일 이상	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

<b>공고 및 신청인 통보</b>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<b>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</b>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	<b>고시 및 신청인 통보</b>
-심의결과 -변경내용 및 절차		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	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
		<b>서면동의를 못 받은 경우</b>	동의 만료일부 ⇒ 10일 이내	<b>공고 및 신청인 통보</b>
		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	결과 통보

5. 도로명부여도면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(☎052-241-7583,75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

## □ 도로구간 변경 조서

일련 번호	도로명	도로 위계	구분	도로구간				기초 간격 (m)	기초 번호	유사 도로명	동일 도로명	중심선	부여사유
				시작지점	끝지점	길이 (m)	폭 (m)						
1	장등길	길	변경전	신현동 676-4	신현동 923	875	3	20	1→60	장등길	없음	노선도 참조	기존 자연부락 장등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.
			변경후	신현동 676-4	신현동 917	1,160	3	20	1→92				

## □ 도로구간 변경 도면

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- 213호

## 공 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등록 공인 내역

공 인 명	등록사유	등록일자 (사용개시일)	서 체	등록공인	비고
(민원사무 전용)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동장인	염포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발급기	2020. 2. 20.	한글전서		횡직인
	신규 구입	2020. 2. 20.	한글전서		종직인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237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  
제 출 자 : 문화예술회관장

## 1. 개정이유

-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항 변경(안 제3조 ~ 안 제10조)

- 조례규정 순서에 맞게 규칙조항 순서 변경

나.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세부사항 신설

- 위원회 기능(안 제2조), 위원회 구성 및 임기(안 제2조의2), 위원회 운영(안 제2조의3)

다. 사용·수강신청 및 허가사항 규정(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)

라. 조문 변경(안 제8조제1항 중 “조례 제18조제1항”→“조례 제19조제1항”)

마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, 제3호서식, 제5호부터 제7호서식까지, 제9호서식, 제11호서식,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)

## 3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

## 4. 입법문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.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 없음.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.

다. 물가대책 심의 : 해당 없음.

라. 관련부서 합의 : 해당 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기 실시(2019. 7. 31)

바. 입법예고 사항 : 2020. 2월 ~ 3월(20일)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 「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”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로 하고, 제2조, 제2조의2,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
2.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
3.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2조의2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, 문화체육과장,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1. 북구의회 의원
2.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
- 3. 그 밖에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조의3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.

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3조(종전의 제2조)제1항 중 “조례”를 “ 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(이하 ”조례“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3조)제2항 중 “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.”를 “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 한다.” 로 한다.

제5조(종전의 제4조)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,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- 1.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·전시·행사 등
- 2.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
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
- 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조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⑥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.
- ⑦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화강좌 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추점으로 결정한다.

제8조(종전의 제7조) 제1항 중 “사용자가 조례 제18조제1항”을 “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제3호서식, 제5호서식, 제6호서식, 제7호서식, 제9호서식 제11호 서식,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<b>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</b>				결 재	담당자	담당	부서장
(√ 표시)회원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체    회비금액 :							
개 인 회 원	성 명		생년월일		성 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
	주 소						
	집 전 화						
	휴대전화				※ 문자서비스(SMS) 수신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안함		
단 체 회 원	단 체 명				대 표 자		
	회 원 수		단체주소				
	집 전 화						
	휴대전화				※ 문자서비스(SMS) 수신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안함		

※ 만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
법 정 대리인	성 명	신청자와의 관계	연락처(휴대전화)

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  
 년 월 일
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

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: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## 회 원 접 수 증

성명(단체명)		유효기간			
주 소					
회비납부액		회원수		구좌수	
귀하(단체)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					

(별지 제1호 서식 뒷면)

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안내

### 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
-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
- 문화예술회관 공연 · 전시,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
-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

2. 수집하려는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전화번호, 단체명, 회원수, 단체주소, 전화번호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 그리고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

4.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.

### 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

1.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

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: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(별지 제3호서식)

##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 희망신청서
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	휴대전화 (집전화)	
소속단체 (직장/학교)			
자격·면허증			
자원봉사 활동 경력			
희망하는 활동 내용			
활동가능 시 간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	<p><b>[개인정보 수집·이용]</b>          자원봉사 신청 정보는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집·보유하며, “개인정보처리방침”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 등)는 자원봉사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수집 후 3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합니다.  <input type="checkbox"/>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<b>[개인정보 제3자 제공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: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</li> <li>• 이용목적 : 자원봉사 활동관리·인증,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,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.</li> <li>•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: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		

본인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

(별지 제5호 서식 뒷면)

##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 안내

### 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

1.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  -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
2. 수집하려는 항목 : 주민등록번호
3.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고유식별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 그리고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
4.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안내

### 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  -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
  -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
2. 수집하려는 항목 : 성명, 단체명, 주소, 전화번호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 그리고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
4.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(별지 제5호 서식 뒷면 계속)

## 대관준수사항 서약서

-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(무대연습, 무대설비 등)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 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.)제13조,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.
-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.
  -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-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-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
  -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문화예술회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,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전에 입장금액,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·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,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,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.

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,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단체명 :

대표자성명 :

(서명)



(별지 제7호 서식)

##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

(전면)

(허가번호 :        )

신청자	주소							
	성명							
허가시설								
사용목적								
사용기간	부터 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		행사일시	행사시간	
	까지 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				
사 용 료 (합계)	공연장		전시실		그 외 시설		부대시설	
	사용내역	사용료	사용내역	사용료	사용내역	사용료	사용내역	사용료

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

**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**

(뒷면)

## 허 가 조 건

1. 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3. 사용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비·시설·비품을 파손, 분실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.
4.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(전시작품, 기구, 비품 등 일체)의 보관, 관리, 경비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, 이의 도난·분실·파손등 사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
5.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·변경하며,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6. 조례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않습니다.
7. 위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.

(별지 제9호 서식)

## 수 강 신 청 서

제 기

접수번호		강좌번호		강좌명	
신청자	성명			수강료	<input type="checkbox"/> 30,000
	주소				<input type="checkbox"/> 24,000
	생년월일			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15,000
	집전화				
	휴대전화			※ 문자서비스(SMS) 수신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안함	

※ 만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
법정 대리인	성명	신청자와의 관계	연락처(휴대전화)

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: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## 접 수 증

기수	
강좌명	
성명	
수강변경 및 취소	
① 강의일정, 강사,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	
② 강의변경, 취소, 환불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릅니다.	
③ 해당강좌 수강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	
년 월 일	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	

(별지 제9호 서식 뒷면)

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안내

### 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#### 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
- 수강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
- 문화예술회관 공연 · 전시,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
-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

#### 2. 수집하려는 항목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성별, 전화번호

####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 그리고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됩니다.

#### 4.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강좌신청을 제한합니다.

### 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

#### 1.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

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: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(별지 제11호 서식)

##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

신청대상	사용자 (신청자)		공연·전시 명칭	
	사용신청일		사용신청기간	~
실제사용기간				
반환신청사유				
반환대상기간	~			( 일)
반 환 계 좌	은 행 명 :	계좌번호 :		
	예금주명 :			
	사용료 납부금액 : 금	원(₩ )		

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



(별지 제15호 서식)

# 수 료 증

제 호

## 수 료 증

주 소 :

성 명 :

위의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제○기 ○○반 ○개월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